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
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·진동·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교통·환경 등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451호, 2020. 6. 9. 공포,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 지정 및 변경과 정비지구 해제 시 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의 지정) 시·도지사는 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(이하 “정비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인구수,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·교통량·물동량 등)
3. 도로의 신설·확장·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
4. 소음·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
5.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
6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·환경 개선 효과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9조의3(물류 교통·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) 시·도지사는 정비지

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
3. 정비지구 해제 사유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2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 지구의 지정) 시 · 도지사는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(이하 “정비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1. 위치 · 면적 ·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</u> <u>2. 정비지구의 현황(인구수,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 · 교통량 · 물동량 등)</u> <u>3. 도로의 신설 · 확장 · 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</u> <u>4. 소음 · 진동 방지,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</u> <u>5.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</u> <u>6.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 · 환경 개선 효과</u> <u>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3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</u>

지구지정의 해제) 시·도지사는
정비지구를 해제하였을 때에는
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
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
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
다.

1. 위치·면적·정비기간 등 정
비계획의 개요
2. 정비지구의 현황(정비지구
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
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)
3. 정비지구 해제 사유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
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
는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07